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해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은 기존의 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 및 개인채무자회생법을 통합하여,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이른바 '통합 도산법'입니다.

2000년대 후반 세계적인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인 경기불황으로 인하여 과다부채의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에 대한 구조 조정의 필요성이 상시화 되었습니다. 2016. 5. 29. 법률 제1417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6. 8. 30.부터 시행되는 채무자회생법(이하 '개정법')은 이와 같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회생절차를 일부 개선·보완한 것인바, 그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규자금 대여 채권자의 권한 강화

채무자의 원활한 신규자금 확보를 유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회생에 필요한 자금(신규자금)을 대여한 채권자의 권한을 강화하였습니다. 신규자금 대여 채권자에게 회생절차의 주요사항에 대한 의견제시 및 관리인에 대한 자료요청 권한을 부여하였고(제22조의 2), 채무자 등으로 하여금 사용목적이 정해진 신규자금의 집행 후 그 내용을 신규자금 대여 채권자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으며(제39조의2 제2항 제3호 다목), 신규자금을 대여하려는 자가 조사위원으로부터 채무자에 대한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제87조 제6항).

2. 상거래채권자들에 대한 보호 강화

상거래채권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채무자의 자금 및 영업계속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부터 20일 이내에 채무자와의 정상적인 영업으로 인하여 취득한 물품대금채권을 공익채권으로 정하였고(제179조 제1항 제8의2호), 채무자의 거래상대방인 중소기업의 사업계속에 현저한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의 회생채권을 다른 회생채권보다 우대하여 변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제132조 제1항, 제218조 제1항 제3호), 회생계획인가결정 전의 회생채권 변제요건을 다소 완화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거래상대방의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제132조 제2항).

3. 채권자의 의견제시권한 등 절차참여권 확대

채무자의 주요 채권자에게 채권자협의회 구성에 관한 의견 제시 권한을 부여하고(제20조 제4항), 제3자 관리인(기존 경영자 외의 관리인) 선임시 채권자협의회에 관리인 후보자 추천권을 부여하며(제74조 제7항), 법원이 조사위원을 선임하거나 신규자금 차입을 허가할 때 채권자협의회 의견의 청취를 의무화하는 등(제87조 제1항, 제179조 제2항), 채권자의 절차참여권을 강화하였습니다.

4. 한국형 프리패키지(pre-package) 제도 도입

이번 개정의 주요 골자 중 하나로, 도산 위기에 몰린 채무자가 법원을 통한 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이전에 자율적·주도적으로 투자자를 찾음으로써 회생 가능성을 도모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성장 가능성은 충분하지만 당장의 유동성 부족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 등에 유용한 제도로, 미국 등에서는 파산법을 통해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채무자의 부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뿐만 아니라 ‘해당 채권자의 동의를 얻은 채무자’에게도 회생절차를 위한 사전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제223조 제1항). 이로써 법원 밖에서의 자율적인 구조조정 작업이 자연스럽게 회생절차로 이어지게 하는 효과뿐만 아니라, 기존의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이른바 ‘워크아웃’) 방식의 구조조정이 채무자회생법상의 회생절차로 일원화되는 효과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개정내용 중에는 사전계획안 제출자가 채권자목록 등을 제출한 경우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별도로 채권자목록을 제출하지 않을 수 있게 하는 등(제50조 제1항 제1호, 제223조 제5항) 본 제도를 뒷받침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법원으로 하여금 채무자가 구상한 사전계획안에 동의하지 않는 채권자 등의 의견을 듣고 사전계획안에 대한 인가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하는 등(제242조의2) 사전계획안에 반대하는 소수 채권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습니다.

5. 일정 규모 이상 법인 채무자의 회생·파산 사건에 대한 관할 집중

채권자의 수가 300인 이상으로서 일정 금액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법인에 대한 회생·파산 사건은 그 소재지 등을 불문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게 함으로써 관할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사건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6. 향후 전망

이번 채무자회생법 일부개정의 취지는 크게 ① 채권자의 권한 강화, ② 한국형 프리패키지 제도의 도입, ③ 서울중앙지방법원에의 관할 집중 허용으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이들 개정 내용은 그 동안 지적되어 온 회생절차의 문제점을 보완함과 동시에 보다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회생절차 운용을 목적으로 한 것인바, 이에 따라 경제 주체들 간 채무자회생법상 회생절차의 활용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장기적인 경기침체 속에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도산이 이어지면서, 파산·회생 이슈는 재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은 물론 일반 투자자 및 채권자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대두되었습니다. 저희 세종은 전문가집단을 중심으로 이들 기업 및 투자자, 금융채권자에 대한 다수의 법적 자문 및 소송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등 회생·파산 분야에 관한 최고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구 파트너변호사	TEL. 02 316 4057	E-Mail. yklee@shinkim.com
● 최복기 파트너변호사	TEL. 02 316 1613	E-Mail. bgchoi@shinkim.com
● 김영근 파트너변호사	TEL. 02 316 1608	E-Mail. ygkim@shinkim.com
● 김남성 변호사	TEL. 02 316 1709	E-Mail. nskim@shinkim.com